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기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 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이며,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 경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공단이 지정하는 경감대상자

3)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1)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3)수급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요청에 따른 전액 자부담 계약의 경우 법정 급여비용 고시를 준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4)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 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계약절차)

1.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계약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3.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측에 보고한다.

제10조(계약자,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계약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및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6) 서비스와 관련된 사전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동의하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제공받는 서비스 중도에 해지 할 권리가 있다.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6) 수급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8)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9)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제)

1.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자의 사망, 계약해지 요청 시 종료된다.

2.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 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이고, 수급 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망시 종료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제12조(변경 계약의 사유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변경 계약의 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 계약의 절차

1) 수급자나 보호자는 1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변경사항 발생할 시, 시설에 통보한다.

2) 시설(담당자)은 수급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 해진 서식에 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 급여계획을 수립한다.